

인원감소시 충원하는곳 적다

전 노협, 단체협약조사결과

인사문제

경단협은 올해 초 각 사업장에 내린 '단체협약 체결지침'에서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노동자가 간여할 수 없는 것이며 노사간의 교섭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 사업장이전, 기구개편, 경

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 3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근로조건을 유지·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느니만큼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취지로 비추어 볼때 근로조건 개선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항은 모두 단체교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 등을 이유로 자연감소되면 곧바로 인원을 충원하는가'라는 물음에 '자연감소되면 곧바로 신규채용을 통해 인원을 충원한다'고 답변한 노조는 34개로 28.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충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노조수가 84개로 전체의 71.2%에 이르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자연감소돼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노조 84개 가운데 53개(63.1%)노조가 '노조를 약화

노조, 조합원 인사에 대한 권한 미진 단체협약에 '정원유지' 조항둔 곳 6개

영진의 입면, 직원의 배치 전환, 인사발령 등의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노조임원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하여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인사·경영권이라는 말은 정부와 자본측이 재산권에 근거하여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낸 말일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개념이며 노동조합법도 단체교섭의 대상

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단체협상에 노조임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조는 전체 응답자 1백18개 중 80개로 67.8%를 차지했으나 조합원인사에 대해서는 16.8%만이 노조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사문제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인사문제를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확보하려는 정부 및 자본측의 시도 또한 만만치 않다.

인천 (주)한국메그론 노사양측이 조합원의 징계, 승진 및 신규채용시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인천시 서구청이 지난 7월 27일 이를 '인사권 침해'라며 변경명령을 내려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징계 및 해고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전체응답자 1백18개 노조 중 노사동수로 구성된 곳이 42개로 35.6%를 차지했고 노측대표가 참여하나 수적으로 소수인 곳이 23개(19.5%), 회사측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곳이 34개(28.8%)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원 해고시 법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한국남산업(3개월전), 한국중권(2개월전), 세화산업(2개월전), 현대자동차(45일전) 등 4개이고, 법이상의 해고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모든 14개 사업장에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킬 목적으로 하청이나 외주로 일감을 빼돌리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이 문제를 이용한 노조 무력화 기도가 심각함을 나타냈다.

고용보장

그런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으로서 단체협약에 '정원유지'조항을 두고 있는 노조는 6개에 불과해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 회사는 이를 노조에 사전통보해야 한다고 명문화 해 놓은 노조는 전체 1백9개 가운데 49개였는데 60일전과 30일전이 각각 20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인원정리를 하고자 할 때 노조와 사전협의 합의 동의 방법협의 등을 거칠 것을 의무화한 단체협약은 모두 70개 노조였고 인원정리시 법정 해고수당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노조는 모두 41개였다.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응답노조 1백18개 26.3%에 이르는 31개 노조가 공장이전에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3개 노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공장이전 계획을 사전에 노조에 통보할 것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놓고 있는 노조 수는 13개이며, 사전협의 또는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노조수는 15개이고 공장이전시 위로금 지급을 명시한 노조는 광림전자(평균임금 6월분), 경일화학(평균임금 3월분), 영진산업(통상임금 2월분) 등 3개노조이다.